

보도시점 : 2024. 11. 6.(수) 06:00 이후(11. 6.(수) 석간) / 배포 : 2024. 11. 5.(화)

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

- 7일부터 「새만금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

... 외국인투자기업, 국내 법인 평가 대신 모기업 신용등급으로 새만금 진출 가능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새만금개발청(청장 김정안)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(11.7~12.16) 한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,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□ 첫째,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.

○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. 이 과정에서,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*을 갖추어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.

*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,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, 총매출액

○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(외국투자가)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.

□ 둘째,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.

○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. 이 때문에 도시계획, 경관,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.

○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, 도시계획, 경관,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.

□ 개정안 전문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의 “정책자료 - 법령정보 - 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* 주소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준상	(044-201-3684)
		담당자	사무관	유이영	(044-201-3687)
	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 킬러규제개혁TF팀	담당자	사무관	이지호	(063-733-1077)
			주무관	고경현	(063-733-1078)
	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	책임자	과 장	노유진	(063-733-1100)
		담당자	주무관	송은주	(063-733-1103)